

	교직원 포상 규정		문서번호	3-2-13		
	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	개정일	2017. 06. 20.		
	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교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 구분)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재직 근속상
 - 가. 10년 근속한 자
 - 나. 20년 근속한 자
 - 다. 30년 근속한 자
2. 공로상 : 학교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어 교무처장 또는 사무처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
3. 정년 퇴직자 포상
4. 최우수 강의평가상(Excellent Lecture Award) :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, 매 학기말 강의평가서를 기초로 평가
5. 우수 연구평가상(Excellent Research Award) : 연구관련 포상규정 제4조 ①호에 의거하여 평가하며, SCI급의 우수 논문을 대상으로 수여할 수 있음

제3조(포상 방법) 포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재직 근속상
 - 가. 10년 장기근속 공로자는 공로패와 순금 3돈 메달
 - 나. 20년 장기근속 공로자는 공로패와 순금 7돈 메달
 - 다. 30년 장기근속 공로자는 공로패와 순금 10돈 메달
2. 공로상 : 소정의 상금
3. 정년퇴직자 포상 :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 1냥
4. 최우수 강의평가상
 - 가. 최우수강의평가상 : 소정의 상금
 - 나. 우수강의평가상 : 소정의 상금
5. 우수 연구평가상 : 소정의 상금

제4조(기타 포상) 총장은 교직원이 대학에 공헌 및 지대한 발전에 노력하였을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다.

	교직원 포상 규정	문서번호	3-2-13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17. 06. 20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사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